

주식회사 풀무원

이사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풀무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과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회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전반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표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풀무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회사의 장기적 과제의 전략방향 검토 및 가이드 제공, 논의, 검증
- 2) 중요 과제를 경영자에게 인지
- 3) 지속가능한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 4) 회사 목적이 조직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소통 전략 수립 및 감독
- 5) 회사의 자원 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

제 3 조의 2 (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이사는 회사 외에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⑥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①이사회는 3 명 이상 11 명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 5 조 (의 장) ①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②의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의장은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의장은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가 보고되도록 하며, 이사회 의 전략방향이 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의장은 총괄 CEO 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될 안전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안전을 잘 준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4) 의장은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 안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5) 의장은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평가와 이사후보추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6) 의장은 총괄 CEO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조언을 하며, 이사회와 경영진간 가교역할을 한다.

7) 의장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회사(계열사포함)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8) 의장은 이사회 주재자로서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주도하여 이사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의장은 이사회가 명료한 결론을 도출해 이사회 결의사항이 회사의 전략 및 자원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0) 의장은 폴무원의 가치 체계와 원칙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제 5 조의 2 (선임사외이사) ①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함)를 사외이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②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외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평가 및 보고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 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2 월, 5 월, 8 월, 10 월, 12 월에 각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0.05.26]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유고 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한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 주간 전까지 각 이사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포함)으로 소집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0.05.26]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 10 조 제 4 호 (1) 및 (3)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삭제 [개정 16.12.02]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14)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 이사의 보수
-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8) 상법 제 449 조의 2 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사업계획 포함)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공동대표의 결정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0) 공장, 해외 현지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만,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 (11) 간이영업양수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2) 풀무원의 가치체계 수정 및 변경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
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다.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중간배당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포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제외)

(7) 사채의 모집 (단, 500억 이하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개정 08.09.16]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12)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13)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가.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이상의 차입. 다만, 구매카드와 수입 L/C 의 한도 및 대출기한 연장(금융기관 변경 포함)과 관련한 차입의 경우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개정 08.09.16]

나.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다만,

①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은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정 08.09.16]

② 100% 지분 보유 자회사의 구매카드와 수입 L/C 의 한도 및 대출 기한 연장(금융기관 변경포함)과 관련한 담보제공 및 보증의 경우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다.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라.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14)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상임이사의 겸업 및 겸직 승인

(3)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주요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사항

4.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 연간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의 누계금액(기 보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이 될 때

(2) 연간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등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이상 될 때

5.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1) 연간 차입금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이상이 될 때

(2) 연간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이 될 때

(3) 연간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이 될 때

(4) 연간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이 될 때

6.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7.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8.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 방침

9. 급여체계, 상여, 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10.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11. 상장회사 공시(신고 및 보고)사항

12. 임원의 주식변동 상황

13. 투자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사항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5.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확정

16.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
1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
18.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개정 21.02.25]
19.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개정 21.02.25]
20.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대표이사와 사

내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의사록은 본사 및 서울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간 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이사회담당 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지원)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①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자체 평가를 제 2 항의 외부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외부 기관에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7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분할에 의한 사명 변경) 회사분할로 의하여 08 년 7 월 3 일을 기준으로 사명을 주식회사 풀무원에서 주식회사 풀무원홀딩스로 변경한다.

부 칙(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명 변경) 14 년 3 월 28 일을 기준으로 사명을 주식회사 풀무원홀딩스에서 주식회사 풀무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6 년 1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8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8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9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21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21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23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제 정 2002. 05. 30.	개 정 2003. 03. 28
개 정 2005. 03. 02	개 정 2005. 07. 01
개 정 2006. 11. 10	개 정 2007. 12. 21
개 정 2008. 07. 03	개 정 2008. 09. 16
개 정 2010. 05. 26	개 정 2012. 02. 28
개 정 2012. 04. 15	개 정 2014. 03. 28
개 정 2016. 12 .02	개 정 2018. 02 .28
개 정 2018. 05. 03	개 정 2019. 02. 27
개 정 2021. 02. 25	개 정 2021. 07. 29
개 정 2023. 02. 23	